

조기 진급 졸업 진학 평가위원회 규정

제정 2025.05.27.

제1조 【명칭】 헌법 및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수지초등학교 조기 진급 졸업 진학 위원회’ 라 정한다.(이하 ‘위원회’ 라 한다.)

1. 용어의 해설

가) 진급: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올라감

나) 조기진급: 학칙에 따라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조기 이수하여 차상급 학년으로 진급함

다) 졸업: 전 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학업을 마침

라) 조기졸업: 학칙에 의한 수업 연한의 단축을 통해 해당 학교 전 교육과정을 조기에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전 과정을 마침

- 초등학교 5학년에서 조기졸업 할 수 있으며 차상급 학교로 조기입학할 수 있음

제2조 【업무】 수지초등학교 ‘위원회’ 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평가방법과 고사에 관한 사항
2.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방법과 고사의 시행
3.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범위결정

제3조 【구성】 ‘위원회’ 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1년(3월 1일 ~ 2월 말)으로 한다.
2. 위원회 구성은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며, 내부위원 8명, 외부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3. 내부위원은 교무기획부장, 교육과정부장, 각학년 부장으로 한다.
4. 외부위원은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장) 1인으로 한다.

제4조 【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선정】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실시한다.

제6조 【대상자 선정기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초1,2학년은 국어,통합-슬기로운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 기관(중앙 행정부터)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 ※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 1항은 초등학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당해 학년 혹은 직전 학년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 발달상황을 참고하여 담임교사의 추천으로 갈음할 수 있음.

제7조 【기타】

1. ‘위원회’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진급 등 결정 시 사유 상세히)를 작성한다.
2. 이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기 진급 졸업 진학 평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8조 【절차】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2. 제6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3. 위원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정한다.
4.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이수 인정 평가를 받는다.

제9조 【이수 기준】 위원회에서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 80%이상을 얻어야한다.

제10조 【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1.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정】 본 규정은 위원회 위원의 제안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제적 과반 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